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혁신 3중세트 등
지방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57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5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8
2. 조문별 검토	12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12
나. 지방투자 지원체계(제2장)	19
다.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3장)	24
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제4장)	35
마.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 등(제5장)	46
바. 보칙(제6장)	61
사. 부칙	6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25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임.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곳 가운데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을 만큼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특히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함께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사회적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2023년 7월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의 지방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과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에 대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조세특례·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부여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기회발전특구의 교육·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설

립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¹⁾,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군

1)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생산)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10년 $\Delta 1.2\%p \rightarrow$ '21년 $5.6\%p$)

○ (고용)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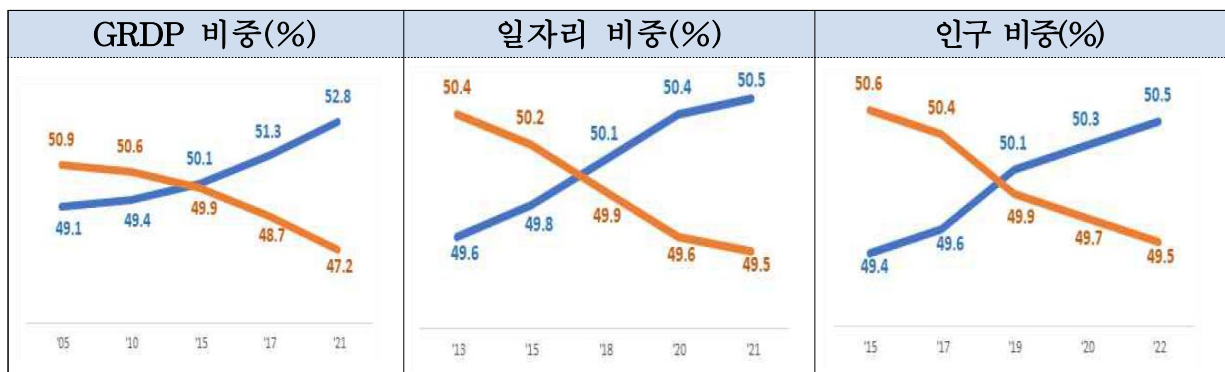
○ (기업)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22년 기준)

○ (인구)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22년 기준)

자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²⁾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건수 또한 감소 추세³⁾⁴⁾를 보이고 있음.

[표 1] 수도권() - 비수도권()간 격차 확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제정안은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 ~ 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0.5 이하인 경우 소멸위험지역, 0.2 이하인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함.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30 ~ 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기업수(개사)	89	87	81	93	89	71	72	69	62	55
국비보조금(억원)	845	1,113	1,192	1,434	1,700	2,073	2,553	1,958	2,056	2,051

이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투자 촉진 대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외국인투자, 유턴기업⁵⁾ 지원과 달리 지방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개별법이 부재하였으므로, 제정안을 통해 지방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재정지원을 규정하게 되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최근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는데, 제정안에 따라 지역 주도로 규제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특구 지정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제정안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정의되고, 해당 법률에 특구 지정근거·절차·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하는 입법 형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지원 근거 법률 :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복귀법」)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6장,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투자 지원체계, 제3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제4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5장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 등, 제6장 보칙으로 이루어짐.

제1장 총칙에서는 특별법의 목적과 “지방” 및 “지방투자” 등 법률의 주요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투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유치·촉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3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지원, 지방기업·지방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의 선정·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이에 대한 조세특례 및 조성·운영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그 외에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근로자 주택공급, 부담금감면 특례 등을 지원하고자 함.

제6장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진술과 청문 기회를 부여하고, 벌칙 적용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제27조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표 2] 제정안 목차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투자 지원체계	제5조(지방투자위원회)
	제6조(시·도 지방투자위원회)
제3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제9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제10조(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제11조(실태조사)
제4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조세특례)
	제15조(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 지원)
	제16조(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제5장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기회발전특구특례)
	제18조(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장	조문
	제19조(규제의 신속확인)
	제20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21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22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23조(실증특례의 취소)
	제2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25조(임시허가의 취소)
	제26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7조(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제28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6장 보칙	제29조(의견진술과 청문)
	제30조(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다만, 제27조는 2년 6개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용어 정의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지방’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업 이전 및 신·증설’을 지방투자로 정의하였으며, 동 제정안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둘째,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부여하며, 지방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및 실태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셋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련하여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의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조성·운영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조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의 조성·조세특례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넷째, 기회발전특구의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중세트 등에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반산업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다섯째,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조성 등에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 감면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제정안의 제명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으로, 안 제1조(목적)는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는 수도권 및 지방, 지방투자,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 기회발전특구 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정안

2. “지방”이란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지방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 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4. “지방기업”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지방근로자”란 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기업이 소재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말한다.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8. “임시허가”란 제12조제4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으로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이하 “지역기반산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인·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먼저, 제명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 등을 지원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제정안과 유사한 제명 및 내용으로 지방투자지원 및 기회발전특구특례 등을 규정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6)(이하 “김상훈 의원안”)도 우리 위원회에 심사 중이므로,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목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과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전체적인 입법목적 및 지원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수도권 및 지방, 지방투자, 기회발전특구, 임시허가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법적 개념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의안번호 제2200548호, 김상훈 의원 등 108인, 2024. 6. 17. 발의

먼저, “지방”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의 범위에 따라 “지방투자”, “지방기업” 및 이에 따른 지원범위도 결정되므로 지역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적절한 지역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김상훈 의원안은 비수도권지역 외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음으로, “지방투자”의 경우 수도권에 있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⁷⁾.

[표 4] 지방투자 관련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이전의 (舊)「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신·증설을 제외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다음으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말하는데, 동 제정안의 지방(비수도권 지역) 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될 수 있음.

[표 5] 기회발전특구 관련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허가”는 기회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으로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지역기반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상 임시허가⁸⁾와 유사하게 기존 법령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인·허가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됨.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⁹⁾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8) 「규제자유특구법」 제2조(정의)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표 6]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고시 사항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 비해 지역기반업종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뜻하는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업종이나 기간상 제한없이 위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만 고시되고 있어 동 제정안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 유효기간 설정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 제정안이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갖도록 함.

나. 지방투자 지원체계(제2장)

제2장(지방투자 지원체계)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표 7]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조(지방투자위원회) ① 지방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에 지방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지방투자와 관련한 자원 조달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지방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투자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지방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정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도 지방투자위원회) 지방에 소재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유치와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선 제정안(제5조)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그런데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년간 설치·운영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지방시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위원 구성 등이 지방투자위원회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동 제정안의 관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8]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u>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u>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장관

2. 법제처장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그 밖에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방투자 유치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하는데,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방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두도록 함.

심의위원회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그 지원조직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과 제정안에 따른 시·도지사 지원조직인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는 서로 역할 및 기능, 위원 구성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와 동 제정안의 관계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9]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3장)

1)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안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안 제9조)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11조) 근거를 마련함.

[표 10]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7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도권 중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정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우선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1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¹⁰⁾와 유사한 내용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11] 고시 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10)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다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 각 호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한도는 국비(교부결정액 기준) 100억원(상생형일자리기업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지원(안 제9조)과 관련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인력난¹¹⁾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지방이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1) 지방중소기업 여전한 구인난, 2024. 1. 12. 조선일보

◇ 외국인 취업자 60%가 수도권 체류 중

(<https://www.chosun.com/economy/smb-venture/2024/01/12/NVTWUCYJYJDPXDYSUYS3LHZVCA/>)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요청근거가 마련되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투자촉진 시책을 마련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목적(촉진시책 마련)은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타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입법례와 같이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에 명시¹²⁾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12] 실태조사 관련 타 입법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u> 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12) 수정의견 예시: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생략)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근거 조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안 제8조)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표 1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8조(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① 국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득세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해 조세특례를 제공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근로자 지방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동일 법인이 지방 발생소득과 수도권 발생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적용이 불가능하고, 동일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근로지역을 이동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역시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곤란하다는 설명¹³⁾이므로, 법인세

13) 기획재정부 의견('24.7.18.) 주요내용

- 제8조 제1항 관련,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① 조세평등 조세평등 원칙에 미부합하고, ② 매출액 발생장소는 판매장만 두는 방식으로 쉽게 지역이전이 가능하여 지방이전 효과 없이 막대한 세수감소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 동일 법인이 지방발생소득과 수도권 발생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적용이 불가능
- '23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였으므로, 별도의 법인세율 차등적용 필요성 없어 삭제 요청
- 제8조 제2항 관련, ① 동일 소득에 대해 지역별 과세부담이 달라져 과세불형평 발생하며, ② 동일 과세기간동안 근로지역을 이동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합산소득에 과세할 수 없어 누진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며, ③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근로자 소속을 변경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및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동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안 제10조)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 등에 출연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대부 등에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표 1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0조(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업·근로자·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의 합의 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정안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수익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2. 제2항 각 호의 사항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및 선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간 합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경제주체간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목적,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 등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임.

따라서 제정안 심사시 두 사업간 중복 여부 및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5] 상생형일자리 사업 근거 조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수익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제4장)

1)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안 제12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기회발전특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지방과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의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고(안 제12조제1항), 지정 신청시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목적·명칭·위치·범위, 비용·효과, 개발·관리 방법, 산업의 육성 전략, 지원 계획, 규제 특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제4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안 제12조제2항), 이 때 기회발전특구는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개발경제성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표 16]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① 지방에 소재하는 시·도지사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

제정안

1호에 따른 점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7.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6.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명칭·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의 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해제를 한

제정안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를 위한 절차·방법과 지정해제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의 절차적 사항과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이미 해당 법률 제23조에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지정요건(시행령 제20조제4항→안 제12조제3항)이나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시행령 제20조제1항→안 제12조제4항)에 관하여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제정안에 따라 지정대상, 지정요건 등을 특별법으로 재규정할 필요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등 입법 형식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7] 현행법상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u>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u>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u> 2. <u>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u> 3. <u>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u> 4. <u>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u> 5. <u>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u>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및 집합투자기구 조성(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기회발전특구펀드, 이하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투자수익에 대한 조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표 1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조세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 총액,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수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이연·감경할 수 있다.

우선, 안 제13조 및 제14조의 조세특례에 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 이전기업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¹⁴⁾¹⁵⁾.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이미 현행법상 조세특

14)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 조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1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 조문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례가 규정되어 있어 제정안에 이를 별도로 제정할 실익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를 두 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¹⁶⁾¹⁷⁾을 통해서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별도로 조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¹⁸⁾.

다음으로, 집합투자기구 조성(안 제14조)에 관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5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규정은 과세특례의 요건 및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함.

제정안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게 되면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지는 측면

1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조세특례 관련 관계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24.7.15)	○ 제13~14조 관련,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서, 실제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인바, 납세자의 오해 여지가 있어 삭제 필요
기획재정부 (‘24.7.15)	○ 제13~14조 관련, 개별법상 국세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는바, 해당 부분 삭제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예산과 달리)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

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게 되므로,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규율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안 제15조~제16조)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안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제품 생산, 서비스 실시, 연구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표 19]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5조(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및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u> 및 <u>공동연구개발 인프라</u> 2.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제정안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시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회발전특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 비용 지원(안 제15조)과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외에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및 그밖에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0] 유사 입법례: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비용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u>기반시설의 지원</u>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이 5%p 가산되고 있어 제정안과 같이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낮다는 설명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⁹⁾.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안 제16조)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일반적인 연구개발비용 지원 외에도 제품·서비스의 실시 지원, 자료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국내 복귀기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을 지원

19)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4.8.7)	○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 우선지원 필요성이 낮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투보조금 지원비율이 5%p 가산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 ○ 유사목적 특구제도(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기반시설 국비지원 규정이 없어 타 제도와 형평성 위배

하는데 비해,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 외에도 제품·서비스 실시 지원, 연구자료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표 21] 유사 입법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마.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 등(제5장)

1)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 및 관리·감독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노동, 환경, 안전 외의 법령에 대한 특례(이하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동 특례의 부여·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표 22]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7조(기회발전특구특례) ① 시·도지사는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노동,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법령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특례(이하 “기회발전특구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

1.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의 필요성과 적정성
2. 기회발전특구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3. 기회발전특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유효기간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회발전특구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신청 또는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투자의 유치·촉진 지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안
④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기업 또는 지방근로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취소 또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적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규제특례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규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의 대규모 투자유치 등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규제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은 노동, 환경, 안전 등의 법령을 제외한 법령에 대하여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두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행 법률 체계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특례를 규정할 때는 “「○○법」에 관한 특례”라는 조문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법률을 각각 열거하고 있음.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하게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중세트 등을 규

정한 「규제자유특구법」은 “규제완화, 적용제외 및 규제권한 이양”을 하려는 대상 법률을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로 모두 나열하고 있음.

[표 23] 규제특례 관련 입법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u>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u>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9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30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 ~ 제69조 (중 략)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각 호로 법률 열거) (중 략)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93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95조~제138조 (중 략) 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동일한 법령등에 의한 규제의 적용 여부도 여러 기회발전특구별로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안 제19조~제25조)

제정안은 이른바 규제혁신 3종세트인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규정하는데,

우선,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인·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안 제19조).

다음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실증을 위하여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 상 기준·규격·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안 제2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등이 실증사업자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며(안 제21조),

실증사업자가 고의·과실로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등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하며(안 제22조),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마지막으로,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한 지역기반산업 시행자는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 상 기준·규격·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임시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표 2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9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

제정안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회신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지역기반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

제정안

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과 유효기간, 관련된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기반산업의 활성화

제정안

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20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사업과 지역기반산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기획발전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기반산업을 위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제정안

2.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

제정안

시대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4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기획발전특구에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적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실증과 출시가 용이해져 기획발전특구가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는 지정기간, 산업내용을 포함하여 지정고시되고, 실증특례는 4년, 임시허가는 3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업종·기간상 제한이 없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도입하면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 유효기간 설정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외국인학교 등 지원, 근로자 주택공급 및 부담금 감면 등(안 제26조~제28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대하여 설립·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안 제26조),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안 제27조), 특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28조).

[표 2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6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①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6.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먼저, 안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유치원, 외국인학교의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의 외국대학과의 인적·물적 교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획재정부²⁰⁾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집적 취지 및 타 지역과의 형

20) 타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기재부 (‘24.8.7)	○ 현행법상 외투기업 집적 취지를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허용 - 기회발전특구의 취지는 외투기업 유치가 아닌바,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분산·난립하면서 학생 모집 등에 있어 비효율 초래

평성 등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제정안과 같이 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27조는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게 특별공급을 하게 되면, 저소득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입주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에서 공공주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²¹⁾.

마지막으로, 안 제28조는 특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

21) 타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24.7.15)	○ 제27조 관련, 공공주택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바, - 저소득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 다른 공공주택 수요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우선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 공공주택은 제외 필요

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의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해당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재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외에 3개 부담금은 소관부처에서 각각 소관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²²⁾이고,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안」(김상훈의원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가 「초지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2) 타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4.7.15)	○ 제28조 3호 관련,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개별법령에 부담금 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의 감면 대상에 불포함되는 경우, 실제 감면은 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3호 삭제 필요
산림청 (24.7.15)	○ 제28조 제4호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으로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4호 삭제 필요
환경부 (24.7.15)	○ 제28조 제5호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외 타법령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또는 제외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바, 5호 삭제 ○ 제28조 제7호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기회발전특구 사업시행과 직접적 연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7호 삭제 필요

바. 보칙(제6장)

제정안은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의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취소 또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취소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도록 하며(안 제29조),

지방투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0조).

[표 26]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9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8항에 따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우선, 의견진술과 청문(안 제29조)와 관련하여 통상 의견진술과 청문²³⁾은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에 관하여 처분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

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제정안은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내부행위에 대하여도 소명 기회를 보장하려는 하고자 함.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이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제141조제1항), 특화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등의 경우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1조제2항).

[표 27] 행정청에 대한 의견진술 및 청문 관련 입법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u>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②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특화사업자,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실증사업자 및 <u>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u>

23)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 특화사업자 및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2. 제1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화특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제89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4. 제91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다음으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은 지방투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지방투자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 및 특례부여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투자위원회’ 보다 폭넓은 권한²⁴⁾을 행사하고,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특례 심의 권한 등도 부여되는데, 현행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제정안에서 ‘지방투자위원회’의 위원의 경우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24)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 전반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사. 부칙

제정안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산단 입주기업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개월 이후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표 2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27조(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안 제2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 대해 실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가 주택수요자로서 주택분양 자격요건 충족여부, 분양시기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별도로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과 같이 기회발전특구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제정법 시행 이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

해서 제정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